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-414호

2025년도 「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지원사업」 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한 해양 분야 혁신 창업·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「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해양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창업·벤처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

2025년 0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

│. 사업 개요

□ 추진배경

-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업의 기존 경쟁우위*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
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역량 결집 중
 - * 조선 수주량 세계 2위, 컨테이너 처리량 4위, 수산물 생산량 18위(양식생산 15위)
- o 성장·확장기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하여 민간 투자 연계 지원 필요

□ 사업 목적

-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**민간 투자를 유치한 해양신산업분야** 유망 기업에 시제품제작, 인증, 해외시장 발굴 등을 위한 자금 지원
 -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
- 민간투자 유치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**우수 창업·벤처** 기업에 대해 **후속** 매칭지원으로 오션스타 기업으로 도약 촉진

□ 사업 내용

- **(사업기간)** 위수탁 협약일 ~ 2025. 12. 31.
 - * 총 사업기간은 2년이나, 협약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연차별로 별도 체결
- (지원규모) 30억원(기업당 최대 2억원(2년간 최대 4억원), 15개사 내외 지원)
- (주요내용)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·벤처기업 대상 기투자받은 민간투 자금과 1:1 매칭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
- (지원방법) 1년차에 시제품제작 등에 대한 중간평가 후 2년차 지원
 여부 결정하며, 2년차까지 국비지원 전액에 대해 수출 의무 부여

□ 기대 효과

- o 해양수산 창업·벤처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해양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
- o 해양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의 수출 특화 성장 및 **글로벌 경쟁력 강화**

Ⅱ. 프로그램 세부내용

□ 프로그램 목적

- o 해양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**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성장 생태계 조성**
 - * 기술 창업 → 민간투자 유치 → 정부 매칭지원(스케일업)으로 투자생태계 활성화

□ 프로그램 목표

- ㅇ 수혜기업별 성과목표(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유치 등) 달성도 측정
 - * 기업이 제시한 성과목표는 선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시 최종 확정 됨

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 규모)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(2년간 최대 4억원), 15개사 내외 지원
- (지원 대상) 설립 3년초과 7년이내 창업·벤처기업 중 최근 5년이내 투자사의 투자와 추천을 받고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해양신산업 기업
- (지원 내용)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
- 정부지원금은 한도 내에서 기 투자받은 민간투자금 이하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,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

< 사업비 구성 예시 >

기 투자받은	투자받은 太 저희 되었고		연도별 정부지원금		
민간투자금	총 정부 지원금	1차년도	2차년도	수출의무액	
4억원이상	최대 4억원	최대 2억원	최대 2억원	최대 4억원	

- 기업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%이상임(현금의 경우 10%이상, 이외 현물)

< 기업 자부담 예시 >

기 투자받은	총 사업비	총 정부 지원금	기업 총 자부담금	(1년차 자부담)
민간투자금	(1년차 자부담)	(1년차 자부담)	현금	현물
4억원	5.8억원 (2.9억원)	4억원 (2억원)	58백만원 (29백만원)	122백만원 (61백만원)

- * 현물: 사업화를 위해 기 보유중인 기계장비(취득가액의 50%만 계상가능)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 인건비로만 구성(현금부담금으로 인건비 집행 불가)
- ** 사업 종료 이전 현물 계상건에 대한 기계장비등을 처분할 경우 현금부담금 등으로 대체해야함

○ (세부 지원 내용) 민간투자기반 사업화지원 세부지원사항에 따라 1차년도 지원금의 70% 이상 사업화 항목 집행 필수, 2차년도 지원금의 60% 이상 수출 항목 집행 필수(기준미만 집행시 불인정)

<민간투자기반 사업화지원 세부지원사항>

구분	지원항목	지원 내용	비고
	시제품 제작	∘ 해외 수출규격에 부합한 시제품 제작 ∘ 재료비, 생산 시설 임차, 위탁 제작, 기술이전 등	
사업화	제품 검증	∘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 ∘ 기타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	
기업 홍보		∘ 홈페이지 등 광고선전, 국내 박람회 참석 등	세부사항은 관리지침 참고
해외 홍보		∘해외 박람회 참가비(여비×), 해외 판촉비 등	
수출	바이어발굴	바이어발굴 🏻 해외현지 시장조사,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등	
	물류포장	포장 물류지원, 포장개선, 통관 운송 등	
기타		∘전담회계기관 정산비용 등	

○ (성과 목표)

- (1차년도 목표) 매출액(수출액) 및 투자유치, 고용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른 자체 목표(성과 목표는 협약 체결 전 KIMST와 협의하여 협약시 최종 확정)
- (최종 목표) 수출목표액(수출의무액 이상) 및 총매출, 투자유치·고용)
- (수출의무) 해외진출지원 특화 사업으로 지원금액 수준의 수출의무 부여 및 사업기간내 수출의무액* 미달성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예정**
 - * 수출의무액은 2차년도 사업종료일('26.11.30.) 기준 총 협약기간(협약체결일로부터 '26.11.30.) 까지의 FOB 등 수출실적증명서로 수출의무 준수여부 확인
- **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출의무액을 50%이상 달성하고 추가 투자유치를 한 경우 등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 예외 적용 가능

□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

○ (지원 자격)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해양신산업·전통산업 혁신 기업으로 최근 5년이내 민간투자사의 직접 투자와 추천을 받은 창업 및 벤처기업

지원 조건	내용
해양신산업 분야 및 전통산업 혁신	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의 해양수산업(다만, 동법 제3조 제3호 가목 등 수산 관련 산업은 제외) 중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분야 ① 해양 바이오, 해양레저관광, 친환경·첨단선박, 해양에너지·자원 등** 「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」('22.12)에서 지정한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대상 분야 등 ② 해운·조선·항만 등 전통산업에 디지털*·친환경** 첨단 기술을 융합한 전통산업 혁신 해양산업 분야 * (디지털) AI, IoT, 빅데이터, 3D 프린팅 등 ** (친환경) 탄소·오염물질저감 기술 등
민간투자사 직접 투자 및 추천	- 민간투자사는 창업기획자, 벤처캐피탈(LLC 포함), 기업형 투자사, 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사업금융(창업)전문회사에 한하여 인정 - 펀드형 등 재원 유형과 관계없이 직접투자금 전액 100% 인정 -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에 투자금 입금이 완료되었어야 함 - 민간투자사별 추천은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
창업기업 및 벤처기업	① 창업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 ② 벤처기업은 「벤처기업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확인기업으로 별도의 업력 제한 없음

- (지원제외대상) 신청자격요건 미충족, R&D 참여제한, 국세체납, 파산, 사행산업 영위, 동일·유사아이템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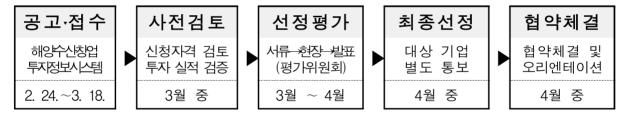
<지원제외 대상>

-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 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본 접수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및 유사한 아이템(기술)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-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□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
 - **(모집기간)** '25. 2. 24.(월) ~ '25. 3. 18.(화) 14:00
 - ㅇ (모집규모) 15개사 내외
 - (사업공고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, K-STARTUP 등 공고 게재
 - 해양신산업 분야 주요 투자사 대상 기업 유망기업 추천 요청
 - o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(www.kimst.re.kr/startup)
 - * 방문·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하며 모집 마감 시간 내 붙임의 첨부서류 제출 필수

<필수제출서류>

- 추천서 / 사업신청서 / 사업계획서
- 민간부담금(현물) 납부 확인서 / 민간부담금(현물)증빙서류
-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/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
- 추천투자사 증빙서류(투자사 등록서류)
- 투자계약서 / 투자검토보고서 / 투자확인서류 / 주주명부
- 결산 재무제표(최근 3개년) / 납세증명서(지방세 포함)
-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 포함)
- (해당시) 벤처기업확인서 / (해당시) 기타 증빙서류(기술인증, 가점 증빙문서 등)
- o (지원 대상 선정) 사전검토, 서류평가, 현장진단, 발표평가 후 최종선정



- (사전검토) 신청기업 지원자격(해양신산업분야 해당여부, 창업·벤처기준, 투자실적 등) 및 필수제출서류, 지원제한 해당 여부 등 검토
- (가점사항) 항목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가점(최대 10점) 부여

가점 규모	가점 항목
5점	•예비오션스타 지정 기업('21~'24)
3점	•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('22~'24) * 수상 다음해부터 3년 간 최초 1회 한정(선발 시 가점 적용)
1점	'24년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발굴 우수기업 '24년 블루 스타트업 우수 기업 '23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우수 기업 * 최종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, 주관기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 * 해양수산 R&D 기술이전 우수기업

- (서류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.5배수) 선정
- * 서류평가 결과 적격기업(60점 이상)에 대해서 현장진단 및 발표평가 실시
- (현장진단)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내 현물 연구시설·장비, 인력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해양신산업 적합성 여부 검토
- * 현장진단 과정에서 허위 사실 기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 후보에서 제외
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- * 신청기업 대표자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추천투자사 담당자 배석 필수
- ** 적격기업(60점 이상)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공고 및 평가 시행 *** 협약포기, 사업해지, 해약 등을 고려하여 예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

<서류·발표 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7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별 점수 중 최고, 최저 점수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를 평점으로 함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기 투자 받은 금액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8/18속 꽃 매심					
서류평가					
사업계획(40) 기술성(40) 정책부합성(20)					
· 사업 동기 및 목적(20) · 추진 일정 적절성(20)	기술 보유 역량(10)기술의 차별성(10)기술 우수성(투자 적절성)(20)			신산업 적합성(10) 산업기여도(10)	
발표평가					
사업목표 및 사업비(40) 사업역량 및 기술성(20) 시장성 및 기대효과(40)					
· 사업 추진 세부 전략(20) · 추천투자사 지원 계획(10)	· 사업화 가능성(10) · 기술·제품의 우수성(10)			· 해외시장 확대 효과(20) · 수출목표액(10)	
· 예산 사용계획(10)			· 사회적 기대효과(10)		
· 현장진단 결과에 따른 적	석격성 여부	적격 □		부적격 □	
* 평가방법,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					

□ 프로그램 운영

- (협약체결) KIMST 지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금 지급
 - * 협약 체결 전 신청기업은 사업화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민간부담금을 납입하여야하며,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기간:협약시부터 사업종료후 1년까지)
- (사업비지급) 사업자 선정 및 협약 후 정부지원금의 70% 지원, 당해
 연도 평가를 통해 과업달성여부를 점검 후 정부지원금 잔액(30%) 지원
- (사업점검) 격월 지원기업 추진 현황 점검(서면, 현장) 및 애로사항 청취
 - * 사업 점검은 전담기관이 직접 실시하며, 필요시 전문가, 회계기관 활용
- o (1차년도(중간)평가) 시제품 제작결과 등 1차년도 사업실적결과 평가
 - *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기업은 2차년도 사업 취소 및 지침에 따라 환수 등 조치

- o (사업비 사용/정산) 전담 회계기관을 통한 사업비 모니터링(격월,현장)
 - * 해양수산 R&D위탁정산을 수행이력이 있는 회계법인을 전담회계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며, 회계정산 및 사업비 모니터링을 위한 회계수수료는 선정기업이 부담함
- (관리방안) (1차년도) 사업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점검(격월, 연차평가 등)
 (2차년도) 수출의무액* 미달성시 전액 환수** 및 향후 지원제외
 - * 수출의무액은 2차년도 사업종료일('26.11.30.) 기준 총 협약기간(협약체결일로부터 '26.11.30.)까지의 FOB 등 수출실적증명서로 수출의무 준수여부 확인
 - **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출의무액을 50%이상 달성하고 추가 투자유치를 한 경우 등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 예외 적용 가능

□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o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o 수출의무액 달성여부 판단 시 수출실적 환산 환율 기준은 총 협약기간 (협약일~26.11.30.)의 하나은행 최초고시 평균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적용함
- o 수행기관 및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 후, 2년 간 매출액, 고용창출, 투자 실적 등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- 타부처 창업지원사업(자금지원)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(주제)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 - * 사업종료 이후에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액 환수 조치함
- >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자격'에 해당하고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o 부정행위, 환수, 제재처분 등 동 추진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 연구개발혁신법」에 준용하여 처리함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	김영진 연구원	02-3460-0374	kimbear@kimst.re.kr